

치안정책리뷰

POLICE SCIENCE INSTITUTE REVIEW

발행인 김학역 편집인 최경환 전화 (031)285-0183 FAX (031)620-2989

권두언

치안일선과 소통하는 창이 되기를 바라며

치안정책연구소장 김학역

연구특집

치안공조와 민간경비산업육성을위한 경비업법 진단과 제언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이상훈

교통과태료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분석

전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연수

경찰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 향상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권태형

최근의 주요 도가니 사건들을 통해 살펴본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경찰수사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치안정책연구소 경찰연구관 한준섭

치안현장탐구

국제체포영장, 그 실현

경북지방경찰청 정보과 경정 권선영

치안정책동향

영국 테임즈밸리 경찰의 회복적 경찰활동

치안정책연구소 경찰연구관 김문귀

입법·판례동향

2014년 1~2월 국내·외 입법·판례 동향

연구소 소식

연구소 소식 및 공지사항

연구관 동정 및 인사

연구소 소개

치안일선과 소통하는 창이 되기를 바라며

치안정책연구소장 김 학 역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월 16일 치안정책연구소 소장으로 부임한 경무관 김학역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우리 경찰의 업무 특성상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치안환경에서 업무수행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온 것은 과학적 이론과 폭 넓은 지식의 힘이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동안 치안정책수립과 집행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여 온 우리 경찰의 명실상부한 씽크탱크(Think Tank)인 치안정책연구소에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연구소는 치안정책의 전문연구기관으로 경찰 시책은 물론 경찰업무의 학문적·이론적 근거를 포함한 중·장기 치안정책을 연구하고, 급변하는 치안수요에 대한 예측과 효율적인 경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미래 치안환경을 예측하여 사전에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치안전망서」를 발간, 경찰 각 분야별 대응 방향 및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치안정책 관련 연구논문과 최근 국내외 치안정책동향, 핫이슈 및 연구소 소식 등을 소개하기 위해 격월간으로 발행하는 「치안정책리뷰」도 어느덧 39호 째를 맞았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정과제인 ‘4대 사회악 근절’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인 「4대 사회악 연구센터」를 신설하여 관

련 분야 연구 역량을 강화한 데 발맞춰, 치안정책리뷰도 4대악 특집호를 연이어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치안정책연구소의 모든 연구 활동은 일선 치안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쓰임을 전제로 할 때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치안정책리뷰가 앞으로도 우리 연구소가 일선 현장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창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 해 우리 경찰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책임이 무거워졌지만, 경찰관 한명 한명이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4대악 근절 관련 지표가 개선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였고, 2013년 정부업무평가에서 경찰청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 위에 경찰은 올해를 국민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한 실천과 성과의 해로 삼고, 눈높이 치안을 고도화·내재화함으로써 국민의 체감안전도와 사회 전반적인 법질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실질적 체감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에 우리 연구소도 보다 실질적이고 현장중심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경찰의 노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2014년 갑오년 청마의 해를 맞아 도약의 기운이 가득하고 국민이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모든 경찰관 여러분의 일과 가정에서 푸른 꿈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PSI](#)

치안공조와 민간경비산업육성을 위한 경비업법 진단과 제언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이상훈

서론

2013년 경비업법 개정과정에서 나타난 경찰과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태도는 민간경비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이라는 과제를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풀어나가려는 고민과 노력을 보여주기보다는, 민간경비산업을 곧장 용역깡패 이미지로 연결시키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민의 눈치만을 살피게 됨으로써 입법의 개선을 통한 민간경비산업의 장기적인 육성과 발전과제들을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정 후 지난 40여 년간 적지 않은 개정을 거듭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 갈 경비업법을 진단하고 민간경비산업 현실에 맞지 않는 경비업법 규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두면서, 선행연구와 홈페이지 자료 등을 분석하는 문헌연구방법으로 고찰하여 보았다.

경비업법의 진단과 제언

1. 경비업무의 법률주의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업무의 종류를 5가지로 열거하고 있어서 다양한 경비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비업법에서 세분화된 개별 경비업무의 명칭을 모두 열거규정으로 두기보다는 앞으로 시장의 필요성에 의해 확대될 보다 세분화된 경비업무를 시행령인 대통령령에서 필요에 따라 개정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 경비업법에서는 중단위 경비업무의 종류를 예시하는 규정만을 두고 소단위의 개별적 경비업무의 종류는 경비업법시행령에 규정할 여지를 열어두는 입법기술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 경비원의 구분

1) 분류기준의 전환: 무장 경비원과 비무장 경비원으로 대별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원의 무장여부가 그 현실적 필요성보다는 경비대상시설의 특성, 특히 국가중심의 보안상 중요도에 따른 분류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일반시설, 특히 무장의 필요성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은행이나 카지노, 귀금속상가 밀집지역(mall) 등에 대한 시설경비나,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호송에 있어서는 날로 흉포화되고 있는 범행에 속수무책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시정하여 일반경비원(비무장경비원)과 무장경비원으로 경비원의 종류를 구분하여 무장경비의 필요가 있는 시설이나 경비업무를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2) '우수경비원 자격보유자 의무배치 최저기준제' 도입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원을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으로만 구분하고 있을 뿐이어서 '경비원의 근속기간 및 경력'을 인정해 주지 못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높은 이직율과 그로 인한 구인 및 재직자 관리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쏟아 붓게

되는 구조적 특성을 개선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경비원의 근속기간이나 보유자격에 따른 우대조건들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경비업법에 이러한 우수자격 및 경력보유자를 일정 인원 이상으로 채용·배치하도록 하는 강제하는 가칭 ‘우수경비원 자격보유자의무배치 최저기준제’를 규정하여 경비용역 입찰자격 기준 등에서 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일반경비원 교육제도

경비원 신입교육은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을 보다 강화한다는 원칙과 민간의 자율적 통제 하에 민간경비원의 자질향상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반면 직무교육은 개별기업의 민간경비서비스 질을 상품의 내용으로 하는 시장의 경쟁에 맡긴다는 입장에서 이를 단계적으로 개별기업의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무교육은 당해 경비업체의 경비서비스 상품의 질을 좌우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굳이 법으로 강제하지 아니하여도 직무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어서, 이제는 국가가 법으로 규제하고 감독하기 어려운 속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4. ‘민간보안산업관리위원회’ 구성의 법제화

현재 치안공조를 위한 실무기구라고 할 수 있는 ‘민간경비발전협의회’는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참모부서 중심의 전문가 및 민간경비단체의 협의체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경찰지휘부의 직접적 관심 밖에 놓여 있는 상황이므로 민간경비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논의기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경비업법 차원에서 가칭 ‘민간보안산업관리위원회’와 같은 위원회의 설치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동 위원회의 위

원장은 경찰청장과 경비협회장이 번갈아 맡는 공동위원장의 형태로 운영한다면 경찰로서는 우리사회의 치안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경비협회 역시 그 위상을 높이고 그 역할을 보다 발전적으로 재정립하는 데에 있어서 획기적인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 산하에 실무조직인 ‘연락사무소(Meldestelle)’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관련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기초적인 협력을 시작하는 것도 치안공조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치안공조나 이를 통한 민간경비산업의 육성·지원은 민간경비도 경찰과의 진정한 협조를 통하여 새로운 이익창출이 가능하다고 인식하여야 하고, 경찰 역시 같은 편익이 존재한다고 하는 공통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협력의 과실이 일반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이를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철학은 범죄와의 전쟁에서 경찰이 이제는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경찰에 대한 시민의 평가 및 각 경찰관의 근무성적평정에 있어서도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수요분석능력이나 다각적인 대응전략 형성능력, 특히 지역사회 치안자원의 동원능력 등을 경찰관서평가 및 경찰관 개별평정의 요소로서 적극 도입해야 할 때가 되었다. [PSI](#)

교통과태료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분석



전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연수

들어가는 글

교통사고의 발생원인 중 운전자관련 사고유발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주로 활용되는 방법이 교통법규 준수율 향상, 즉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경제적·비경제적 제재수단의 강화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국토해양부(2011)의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은 경제수준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단속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1995년부터 2012년까지 17년 동안 1인당 GDP는 약 3.1배 이상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범칙금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결국, 교통법규위반 단속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단속 시 위반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지만,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량소유주에게 범칙금보다 1~3만원이 많은 과태료가 부과될 뿐 벌점은 병과될 수 없다. 벌점 부과와 면허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됨에 따라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경각심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나아가 교통법규 위반 조장과 교통사고의 발생률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무인단속 시 차주에게도 벌점에 상응하는 과태료 부과 또는 무인단속기에 의한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강화로 교통법규 준수율 제고와 법질서 확립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교통법규 준수율 제고에 대한 사회적 공감

대 형성과 단속 및 규제제도의 입법 불비로 인한 문제해결의 선결과제로 시민의 인식수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행 교통과태료 및 범칙금의 적정수준과 운전면허 벌점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한다.

조사설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시도의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현행 교통환경 및 교통안전, 교통법규 위반경험 및 법규위반에 대한 인식, 교통과태료 및 범칙금, 벌점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금전적 가치, 과태료 부과방식에 대한 인식, 교통규칙위반행위의 상대적 위험도에 대한 인식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조사대상에게는 다음의 교통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한 삽화자료를 제시하여 교통과태료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돕도록 하였고, 이후 설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 연구의 자료처리는 IBM SPSS Statistics 2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또,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전공교수 및 박사학위 전공자 3인의 내용타당성 검증을 거쳤고,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과 교통환경 및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인식, 범칙금 및 과태료의 수준에 대한 인식 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산술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및 논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운전자들은 우리나라의 교통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안전하며, 교통사고의 위험도 다소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난폭운전, 과속운전,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미준수를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꼽았다.

둘째, 조사대상의 교통법규 위반경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1.6%가 연 1회 이상 과속운전을 경험하며, 실제 3년간 단속에 적발된 사례는 15.2%밖에 되지 않았다. 교통법규 위반 역시 단속경험이 18.2%에 불과하여 처벌의 확실성 수준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응답자의 주변인을 기준으로 약 45% 이상이 과속운전을 하지만, 단속에 대해서는 12.8% 수준이라고 추정함으로써 과속운전자의 2/3는 처벌을 회피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교통규제정책의 실효성제고를 위해 단속(처벌)의 확실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셋째, 김만배·명묘희(2006)의 연구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2004)의 조사에서 우리나라 교통과태료 및 범칙금 수준이 높다는 응답이 각각 49.1%, 48.6%였던 것에 비해, 본 조사에서는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이 29.6%로 10%가량 낮아졌다. 특히,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과태료 인상의 필요성이나 과태료 수준이 거의 20여년간 동결된 점이나 선진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교통과태료수준이 낮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과태료의 수준에 대한 의견을 구하지 않고, 합리적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여 질문을 할 경우 과태료 수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넷째, 벌점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금전적

가치에 대해 벌점 10점의 금전적 가치는 약 7만원~19만원까지의 분포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보험료 할증을 고려했을 때 7만 3,181원, 면허정지/취소를 고려했을 때 9만 1,605원, 면허정지처분(벌점40점 기준)을 고려했을 때 77만5,187원(벌점10점 기준 19만 3797원), 면허취소처분(벌점120점 기준)을 고려했을 때 122만3,863원(벌점10점 기준 10만1,986원)으로 계산되었다. 물론, 이것이 엄밀하게 경제적 가치나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조사대상의 설문응답을 근거로 산출한 것이라는 점에서 오차는 있을 수 있으나, 벌점을 회피하기 위해 과태료를 선택하는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개발 시 중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즉, 벌점을 회피하기 위해 과태료를 선택할 때 1만원만 더 납부해야 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점이고, 이 문제를 개선한다면, 최소 5만원 내지 7만원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교통과태료 및 범칙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끝으로,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과태료나 범칙금의 수준이 합리적인가에 대해 그 위험성을 기준으로 검토해본 결과, 중앙선침범 > 운전중 휴대전화사용 > 안전운전위반 > 속도위반 > 고속도로 안전거리미확보 > 지정차로위반 > 서행의무위반의 순으로 나타나, 정철우·권병우(2010)가 사고발생시 피해수준을 기준으로 한 순위와 교통범칙금 내지 과태료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순위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경범죄처벌법 상 위반행위 일부와도 비교를 실시해본 결과 범칙금의 수준과 국민의식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교통과태료 및 범칙금제도에 대한 개선을 고려한다면, 국민의 법감정 내지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PSI**

경찰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 향상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정책기획연구실 연구관 권태형

서론

우리 일상에서 개인정보는 공공·민간 부문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어느 기관 보다 많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습관, 개인정보 보호 교육·학습 분야,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지식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경찰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경찰의 개인정보 보호의식 향상 방안을 조직적 측면과 교육적 측면에서 제시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경찰의 개인정보 보호의식 설문조사

● 조사개요

본 연구에서는 경찰청 소속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방법은 경찰 내부망 통합포털시스템의 설문조사 기능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기간은 2013년 6월 14일부터 18일까지이고, 응답자 수는 1502명이다.

● 인터넷 사이트 ID와 비밀번호 개수

이용자가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서 같은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한다면 ID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었을 때 유출된 ID와 비밀번호를 입수한 타인이 그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도 접속할 수 있으므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하는 ID나 비밀번호는 다를수록 안전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ID와 비밀번호 개수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ID는 3~4개를 사용하는 사람이 520명(34.6%)으로 가장 많고, 비밀번호는 3~4개를 사용하는 사람이 663명(44.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 표 2 참조).

표 1.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ID 개수

단위: 명(%)

모두 같음	2개	3~4개	5개 이상	모두 다름	전체
332 (22.1)	337 (22.4)	520 (34.6)	220 (14.6)	93 (6.2)	1,502 (100.0)

표 2.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비밀번호 개수

단위: 명(%)

모두 같음	2개	3~4개	5개 이상	모두 다름	전체
174 (11.6)	403 (26.8)	663 (44.1)	158 (10.5)	104 (6.9)	1,502 (100.0)

● 개인정보 유출 인지 후 비밀번호 변경 여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해야 하는데, 실제 개인정보 유출 피해 당사자가 되었을 때 비밀번호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조사해 보았다. 조사결과 해당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는 응답자가 679명(45.2%)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표 3. 개인정보 유출 인지 후 비밀번호 변경 여부

단위: 명(%)

변경함	변경안함	유출 해당없음	유출여부 모름	회원 탈퇴함	전체
679 (45.2)	160 (10.7)	243 (16.2)	329 (21.9)	91 (6.1)	1,502 (100.0)

● 인터넷 이용 후 로그아웃 습관

로그아웃(Logout)이란 사용 중인 컴퓨터 시스템에서 접속을 끝내거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인터넷 사이트 사용자가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컴퓨터를 두고 자리를 떠나서 ‘세션공유’ 상태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다면 나중에 접속한 사람은 이전 사람이 로그인한 상태를 접하게 된다. 따라서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사람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로그아웃은 인터넷 사용 시 가장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칙이라 할 수 있다. 조사결과 905명(60.3%)이 ‘항상 로그아웃을 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336명(22.4%)이 ‘어느 정도는 한다’고 두 번째로 많이 응답하였다(표 4 참조).

표 4. 인터넷 이용 후 로그아웃 습관

단위: 명(%)

전혀 안함	거의 안함	두 번에 한 번	어느정도 한다	항상 한다	로그아웃을 모름	전체
20 (1.3)	201 (13.4)	38 (2.5)	336 (22.4)	905 (60.3)	2 (0.1)	1,502 (100.0)

● 개인정보 보호 교육·학습 경험

2012년부터 설문 응답일 까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교육·학습 경험에 대해 질문하였다. 직장집체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139명(75.8%)이었고, 사이버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094명(72.8%)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학

습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827명(55.1%)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표 5. 개인정보 보호 교육·학습 경험

단위: 명(%)

구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전체
직장집체교육	1,139(75.8)	363(24.2)	1,502(100.0)
사이버교육	1,094(72.8)	408(27.2)	1,502(100.0)
개인학습	827(55.1)	675(44.9)	1,502(100.0)

●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학습 필요성 인식도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학습분야를 7가지로 나누고 각 학습분야에 대해 응답자가 생각하는 학습 필요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모든 분야에서 응답자의 85.0~88.9%가 학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개인정보 피해 예방방법’에 대한 학습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6 참조).

표 6.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분야별 학습 필요성 인식도

단위: 명(%)

설문내용	전혀 필요 없다	별로 필요 없다	그저 그렇다	어느 정도 필요	매우 필요	전체
개인정보 보호 개념	13 (0.9)	67 (4.5)	145 (9.7)	747 (49.7)	530 (35.3)	1,502 (100.0)
		80(5.3)		1,277(85.0)		
개인정보 유출사례와 관련 판례	9 (0.6)	61 (4.1)	126 (8.4)	729 (48.5)	577 (38.4)	1,502 (100.0)
		70(4.7)		1,306(87.0)		
개인정보 보호법령령 주요내용	6 (0.4)	45 (3.0)	135 (9.0)	780 (51.9)	536 (35.7)	1,502 (100.0)
		51(3.4)		1,316(87.6)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	9 (0.6)	52 (3.5)	134 (8.9)	792 (52.7)	515 (34.3)	1,502 (100.0)
		61(4.1)		1,307(87.0)		
개인정보 피해 예방방법	11 (0.7)	44 (2.9)	111 (7.4)	704 (46.9)	632 (42.1)	1,502 (100.0)
		55(3.7)		1,336(88.9)		
영상정보 처리기기	13 (0.9)	50 (3.3)	137 (9.1)	755 (50.3)	547 (36.4)	1,502 (100.0)
		63(4.2)		1,302(86.7)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경찰실무	10 (0.7)	49 (3.3)	121 (8.1)	723 (48.1)	599 (39.9)	1,502 (100.0)
		59(3.9)		1,322(88.0)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학습방법 선호도

어떠한 학습방법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학습하는 것을 선호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669명(44.5%)이 사이버 교육을 선택하여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여주었다. 그 뒤를 이어 직장교육이 359명(23.9%), 연수교육이 256명(17.0%)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표 7.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학습방법 선호도
단위: 명(%)

사이버 교육	직장 교육	연수 교육	자습	학습 모임	기타	전체
669 (44.5)	359 (23.9)	256 (17.0)	135 (9.0)	63 (4.2)	20 (1.3)	1,502 (100.0)

●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지식

본 연구에서는 경찰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간단한 O/X 퀴즈를 통해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폐기된 법’을 맞힌 사람이 345명(23.0%)으로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으며, ‘친목단체는 회원 개인정보 수집 시 회원동의 필요 없음’을 맞힌 사람은 452명(30.1%)로 두 번째로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표 8 참조).

표 8. 개인정보 보호법 퀴즈 정답률

문제(정답)	전체 (1502명)	
	정답자(명)	정답률(%)
친목단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대상	1,252	83.4
친목단체는 회원의 개인정보 수집시 회원동의 필요 없다	452	30.1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도 보호대상	1,423	94.7
대중목욕탕 탈의실은 CCTV 설치 금지 장소	1,266	84.3
대중교통 내부에 설치된 CCTV는 녹음기능 사용 금지	1,012	67.4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폐기된 법	345	23.0

경찰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 향상 방안

조직적 측면에서는 현재 경찰청 정보화보안계 내 소수인력으로 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팀’을 ‘개인정보 보호계’로 확대·강화하고, 개

인정보 보호분야 법전문가를 채용하며, 지방청, 경찰서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을 둘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그리고 치안정책 도입 시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준수하는지 사전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하며, 분야별 개인정보 처리 세부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경찰교육기관에서 개인정보 교육을 보다 강화해야 하며, 사이버교육 방식 통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무를 다룬 플래시 애니메이션, 개인정보 보호 소식지, 개인정보 보호 사례집 등과 같은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배포하여 활동하는 것을 제안한다.

경찰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사이버 강의

한편, 본 연구의 주요 일환으로서 연구자는 ‘경찰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사이버 강좌’ 제작에 강사로 참여하였다.

이 ‘개인정보 보호법 사이버 강좌’는 5차시로 구성되었다. 개인정보 보호 개념에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례, 관련 소송 사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개인정보 피해 예방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의 핵심 내용과 실무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사이버 강의의 장점을 살려서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 강의에 대한 흥미와 학습 집중도를 높이도록 구성하였으며, 일선 실무에서 사용하는 서식도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많은 직원들께서 수강하시기를 권해드린다. [PSI](#)



내부망 통합포털시스템 좌측상단 ‘교육포털’아이콘 클릭 → 경찰사이버교육포털 접속 → ‘개인정보보호법’ 검색 .

최근의 주요 도가니 사건들을 통해 살펴본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경찰수사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치안정책연구소 범죄수사연구실 경찰연구관 한 준 섭

서론

2009년 영화 ‘도가니’¹⁾의 흥행은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대폭 증대시켰으며, 일명 ‘도가니법’ 등 관련 법률이 마련되고 장애인 시설의 관리감독 체계가 강화되는 등 그간 소외되어왔던 장애인 성폭행 문제가 공론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변화들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제2의 도가니 사건’으로 지칭되는 대형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성가족부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상담실적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성폭력 위험에 더욱 빈번히 노출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최근의 주요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 네 건을 담당 수사관 및 원스톱지원센터 피해자 조사 경찰관 등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찰수사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최근 ‘도가니’ 사건들의 특징

주요 도가니 사건 네 건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낼 수 있었다.

첫째, 다수의 피해자가 장소를 불문하고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 피해자들은 총 28명

(광주8, 천안 6, 전주 7, 제주 7), 평균 7명이었으며, 수업 중인 교실은 물론 가장 안전해야 할 피해자의 학교 기숙사나 피해자의 집에서까지 장소를 불문하고 성폭행이 발생하였다. 구체적으로, 강당, 실습실, 창고, 행정실, 화장실, 피의자 집, 모텔, 노래방 등 외부와 차단될 수 있는 거의 모든 공간에서 피해가 발생하였다.

둘째, 지적장애인 피해자들의 성폭행 피해는 반복적이고 장기적이었다. 광주 사건은 5년간(2001~05), 천안 사건은 2년간(2010~11), 전주 사건은 10년간(1992~2001, 피해자 주장), 제주 사건은 3년간(2010~13) 성폭력 피해가 반복됐으며, 이는 평균 5년에 달한다.

셋째, 피의자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하고자 하였다. 즉, 모든 피해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함에도 피의자들은 모두 자신들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였는데, 이들의 주장과 달리 광주, 천안, 전주 사건 피해자의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모두 ‘거짓’이었다. 한편, 제주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거나 밥 먹고 노래방에 놀러 가자는 등 보상 및 유인으로 사건을 은폐하고자 하였으며, 광주와 천안 사건에서는 목격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범행사실의 발설을 막으려 하였다.

넷째, 피의자들은 모두 피해자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광주는 교장·행정실장 등 교직원, 천안은 실습교사, 전주는 특수교사, 제주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 이웃남성들이 피

1) 소설 및 영화의 제목 ‘도가니’란 ‘광란의 도가니’ 내지 ‘흥분의 도가니’를 의미한다.

의자였는데, 이들은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피해자들을 보호 감독하여야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같은 지위를 자신들의 성적욕구를 채우는데 이용하였다.

다섯째, 네 건 모두 피해자 본인이 아닌 내부 제보자(광주), 도가니 사건 직후의 전국 일제조사(천안, 전주), 관찰형사 첩보 입수(제주) 등 제3자에 의해 인지 및 신고 되었는데, 이로 인해 마지막 피해 후 광주 사건은 6년 후(2차 수사의 경우), 천안 사건은 6개월 후, 전주 사건은 11년 후, 제주 사건은 3년 후(피해자 주장)에나 뒤늦게 수사가 착수되었다.

표 1. 주요 지적장애 성폭력 사건들(2014년 2월 28일 기준)

광주 도가니 사건 (2011년 9월)	광주 인화학교의 청각 및 지적 장애학생 8명이 교직원들에 의해 장기간 유린당한 사건. 소설 및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 (대법원 유죄판결 확정)
천안 인애학교 사건 (2011년 12월)	장애학생들이 2010년 전후 특수교사에게 수차례 성폭행 당했다며 '천안판 도가니'로 보도된 사건. 광주사건 직후 알려져 '제2의 도가니'로 불림 (1심 유죄, 2심 유죄)
전주 자림원 사건 (2012년 12월)	재단 이사장의 처조카인 특수교사에 의해 많은 여학생들이 10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전주판 도가니'로 보도된 사건 (검찰 수사 중)
제주 영세민 아파트사건 (2013년 9월)	다수의 지적장애 여성들이 같은 아파트의 남성들에게 수년간 성폭행 당해왔다고 '제주판 도가니'로 보도된 사건 (일부 피의자 1심 유죄, 나머지는 1심 진행 중)

경찰 수사상 문제점

첫째, 뒤늦게 수사가 착수될 수밖에 없어 경찰 수사관들이 피해사실 및 피해일시를 입증하는 데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었다. 즉, 대부분의 사건이 이미 수 년이 경과하여 물리적 증거는 사라지고, 피해자와 참고인의 기억은 희미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둘째, 면접에 참여한 대부분의 원스톱센터 수사관들은 현행 진술조사기법(NICHD 프로토콜²⁾)이 아동에 적용할 때와는 달리 지적장애

인에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지적장애인들이 지적능력은 아동과 비슷할지 몰라도 사회경험 및 적응능력에서는 아동과 매우 다르며, 부정적 자아개념, 말과 언어의 지체, 고립과 반복된 거부의 경험 등으로 아동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원스톱지원센터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내실 있는 피해자 진술조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행 규정 상 진술조사에는 피해자, 여성경찰관, 신뢰관계인, 국선변호사(이상 진술녹화실), 속기사, 형사, 진술분석 전문가, 진술조력인, 보호자, 검사(이상 모니터실) 등 최대 10명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실제 대부분의 원스톱지원센터는 이들을 한꺼번에 수용할 만큼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며, 조사과정에서 이들을 상대할 인력도 상당히 모자란 상황이었다.

넷째, 수사관들은 자신들의 지적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 및 경험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즉, 이들은 지적장애인 피해자 조사가 아동보다 어려우며, 자주 경험하기도 힘들다며 이에 대한 부담감 및 심화교육의 필요성을 호소하였다. 여러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적장애인도 적절한 단서나 질문이 있을 경우 자신의 기억 및 경험을 효과적으로 진술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진술조사 경찰관의 전문성 강화 및 경험 축적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섯째, 장애인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경찰의 기초통계가 상당히 부족하다. 현재 경찰은 장애유형 등 세부 내역 없이 전체 장애인 성폭력 숫자 및 원스톱센터 이용실적만을 집계

개방형 질문을 통해 자유회상 기억을 촉진하여 정보의 양과 질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며, 미국 외 여러 나라에서 그 효과성이 인정되어 아동피해자 조사에 사용되고 있다. 한국 경찰도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조사 시 이 프로토콜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2) '미국 국립 아동건강 및 발달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for Child Health and Development, NICHD)'에서 개발한 시나리오 형식의 피해 아동 조사기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현황 파악 및 관련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개선방안

첫째, 무엇보다도 “제2의 도가니 사건화” 원천 차단을 위한 선제적인 경찰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일단 발생하면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그 피해가 눈덩이 같이 불어나며, 그것도 이미 발생 후 수 년이 경과한 시점이라 범행 입증도 쉽지가 않다. 따라서 예방이 최선의 수사 전략이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 경찰관서별로 장애인 시설 및 밀집 거주지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정보를 철저히 입수하여야 할 것이며, 지자체 등 관련부처와의 정기 합동점검으로 이미 진행 중일 수도 있는 피해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적장애인의 진술특성에 부합하고 일선 수사관들이 활용하기 쉬운 지적장애인용 진술조사 프로토콜을 연구 및 개발하여야 한다. 즉, 지적장애인들의 불명확한 진술 및 무응답에 대비한 다양한 질문형태 및 진술전략을 마련하여, 이 프로토콜에 의한 조사로 피해일시 등 세부사항들이 특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실습위주의 교육, 전문가의 정례적 평가 등 수사관의 관련 전문성 강화가 요구된다. 먼저, 전담수사관을 대상으로 실습위주의 심화교육을 반복하고, 개별 진술조사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 및 피드백 제공을 정례화 하는 한편, 전담조사관 간에 서로의 조사경험 및 지식을 활발히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관들의 경험 축적을 위해 최소한의 근무기간을 보장하고, 외부의 장애인 성폭력 전문가를 전담조사관으로 특채, 일정기간 복무토록 하는 방안

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원스톱지원센터의 근무 환경 개선 및 조사관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예산 확보 및 여가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로 열악한 시설을 개선하고, 조사관 인력도 충원하여 현행 1인 1팀 근무를 2인 1팀 4교대 근무로 전환시키는 등 수사관들이 진술조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장애인성폭력 관련 통계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치안정책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즉, 장애유형별로 성폭력 사건을 집계할 수 있도록 발생사건 통계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원스톱센터 내방 장애인에 대한 집계방식도 변경, 정상인·아동·장애인 등으로 구분하는 한편 성별, 장애유형, 시설/재가 장애인 여부 등도 세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결론

현재 경찰이 지적장애인 성폭력사건 수사에 있어 피해자 진술조사 및 피해사실 특정 등 최종 판결에 까지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향후 이상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개선된다면, 경찰의 과학적, 전문적 수사능력을 조직 내외에 과시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적극 보호하고 파렴치한 범죄자들은 반드시 응징하는 정의로운 경찰상 구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종국적으로는 이는 경찰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 및 조직 발전을 위한 치안인프라 확보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PSI](#)

국제체포영장, 그 실현

경북지방경찰청 정보과 경정 권선영



들어가는 말

수사권한은 한 국가의 주권의 범위를 벗어나 실행될 수 없다. 정보의 교환, 순환교육에 머물고 있는 인터폴을 진정한 국제경찰이라고 오해하거나, 살인면허를 가졌다는 영화 속 007을 실재한다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를 다른 나라까지 쫓아가서 직접 잡아올 수는 없다. 그러면, 직접 잡을 수 없다는 이유로 그냥 내버려두어야 할까? 그냥 두게 되면, 죄를 짓고 해외로 도망가는 범죄자가 지금처럼 갈수록 증가할 것이다.

인터폴의 검거 작전과 도피사범에 대한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

해외 도피 범죄인은 1990년부터 2011년까지 22년간 2,549명 이었으나,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970명의 범죄인을 검거하였고 법무부(검찰)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근거한 강제송환은 총 113명에 불과하였다.

도피사범의 신병을 어떻게든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야만 형사적 실체진실의 발견 가능성도 그만큼 크다. 그런데 범죄인은 누가 어떤 수단을 활용하여 어떻게 검거하는가? 범죄현장에서의 현행범체포나 긴급체포가 아니라면, 죄인임을 널리 알림으로써 그 누구라도 그를 검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죄인임을 알리고, 누구든 검거할 수 있도록 하는 ‘영장’에 관심을 두는 이유이다.

영장의 효력 범위, 그리고 그 확장을 위한 노력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자가 영토 이외의 지역에 머물 경우, 한 국가의 주권은 그 영토 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범인을 검거하거나 해외조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각국은 외교관계를 구성하고, 범죄인 인도, 사법공조 등의 이름으로 양자 또는 다자간 사법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대개 조약으로 협력관계를 규정하지만, 조약이 없을 경우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협조한다.

그러나 범죄인 인도 등 사법공조는 수사당국이 해당국의 외교채널을 활용하여 상대방 국가의 외교 부서를 거쳐 동 사법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는데다, 범죄인 인도를 요청 받은 국가에서 별도의 심리를 거치는 경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즉시성, 강제성 등의 면에서 그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양자 또는 다자간 조약을 통한 기존의 범죄인 인도제도보다 획기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유럽체포영장제도 역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통합을 염두에 두고 인적 교류 등을 끊임 없이 논의해온 역사적 배경과 함께, 상호 인접한 지리적 여건이 감안된 형사적 절차로서, 유럽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국제적인 면모를 보이는 영장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발부한 영장이 있지만, 동 재판소의 심리 대상이 한정적인데다, 재판소의 지위 관련 협정이 2002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지게 됨에 따라 그 이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심리를 할 수 없고, 또한 그 이후에 재판소의 지위를 인정한 국가의 경우에는 그 인정일 이전의 범죄에 대한 심리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인터폴 적색수배서의 법적 효력

인터폴 적색수배서는 국제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 인터폴 현장과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원국 상호간 교환되는 필요 정보와 자료 가운데 형사소추 또는 刑집행 대상인 수배자의 범죄인 인도를 염두에 둔 체포를 위해 발부된다.

2007년부터 190개 순회원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12년 4월 말까지 응답한 106개국(55.8%) 중 ‘인터폴 적색수배서가 임시 체포를 공식 요청하는 문서인가’에 대하여 76개국(71.7%)이 긍정적으로 답변하였고, 그 중 20개국은 시스템 적으로 소재발견 즉시 체포하고, 그 외의 국가들은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 후 필요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해외 도피사범 검거, 범죄근절 기초

인터폴의 지위와 활동 영역, 인터폴을 중심으로 한 협력방안에 대한 많은 논의와 연구를 통해, 그리고 개별 회원국과의 접촉 등 한 걸음씩부터 시작하는 자세로, 인터폴이 그저 연성법적 체계에 머무는 현재의 모습을 벗어나야 한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인터폴 적색수배서의 법률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고, 또한 인터폴 수배서와 공지서를 통해 수많은 범죄자들을 세계 각지에서 검거하는 실제 사례들을 상기해보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

누구나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그만큼의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형벌의 위하(威嚇)적 성격은 사람들에게 범행을 저지

르기 전에 한 번쯤 더 생각하게 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게 한다. 여기에다 죄를 짓고 도망갈 곳이 없다는 사실까지 더하면, 형벌의 위협만큼이나 범죄를 억제할 수 있게 된다.

해외 도피사범의 즉시적인 검거, 국제성 범죄의 근절을 바라는 것이 그저 간단한 꿈에 그치는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이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의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해야 할 때다.

맺는 말

사람은 뜻하는 것을 이루거나 제작하기 위해 유형 또는 무형의 도구를 만들어 사용할 줄 알았기 때문에, ‘호모 파베르(Homo Faber)’나 ‘호모 하빌리스(Homo habilis)’라는 이름이 주워졌다. 세상의 범죄를 어떻게 하면 줄여서, 보다 더 안전한 세계(the safer world)를 가꾸어갈 수 있을까 고민한 결과로 몇 십년간 발전해 온 도구를 이제 제대로 활용해야 할 때다. ‘호모 파베르’라는 단어를 구상한 프랑스 철학자 ‘앙리-루이 베르송(Henri-Louis Bergson)’은 ‘사람은 유형, 무형의 도구를 만드는 동시에 자기 자신도 만든다.’고 말했다. ‘자기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로 만든다.’는 말처럼 들린다. [PSI](#)

치안정책리뷰를 보신 후 편집실 앞으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며,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내용

- 이름, 근무지, 연락처, 이번 호에서 좋았던 기사
- 치안정책리뷰에서 다루기 원하는 내용
- 기타 치안정책리뷰 발간에 관련된 의견

보내실 곳

- e-mail : webmaster@psi.go.kr
- 내부망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강소영

영국 테임즈밸리 경찰의 회복적 경찰활동



치안정책연구소 사회안정대책연구실 경찰연구관 김문귀

회복적 경찰활동에 대한 이해

전통 형사사법시스템의 문제점·부작용 등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은 40여년 전부터 전세계 형사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회복적 사법에 관한 합의된 단일의 개념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피해자, 가해자, 지역사회 구성원 등 범죄로 인해 영향을 받은 모든 이들이 제3자(조정자·촉진자)의 중재하에 범죄문제해결에 자발적·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피해의 회복, 당사자들의 사회재통합, 사회평화 재건이라는 목적을 추구하는 범죄대응에 관한 이론·패러다임·철학·제도 등으로 이해되고 있다. 대표적 실천 모델로는 조정(Mediations), 회합(Conferences), 서클(Circles) 등이 있는데, 주로 소년범·재산범 등 경미한 범죄를 대상으로 기소전 단계에서 실행되지만, 최근에는 그 적용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회복적 사법의 실행에는 경찰, 검찰, 법원, 보호관찰기관 등 다양한 사법기관들이 개입하는데,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형사절차의 첫관문이고,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회복적 사법을 적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와 관련, 영미권 및 유럽에서는 90년대 중반부터 회복적 경찰활동(Restorative Policing)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하려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회복적 경찰활동이란 회복적 사법의 원리와 실천에 입각해서 문제해결, 지역사회 참여, 범죄예방 등에 초점을 둔 경찰활동을 의미하는데, 회복적 사법과 지

역사회 경찰활동이 연계된 경찰활동의 새로운 비전·철학으로 이해된다. 실천사례로는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벨기에 등의 경찰회합프로그램(Police-led Restorative Conferences Programmes) 운영과 회복적 경고·훈방 등 전환조치적 처분(Diversion) 등을 들 수 있는데, 단일 관서로는 회복적 사법을 경찰활동의 기본철학으로 채택하고 있는 영국 테임즈밸리(Thames Valley) 경찰의 사례를 회복적 경찰활동의 본보기로 꼽을 수 있다. 아래에서는 영국 테임즈밸리 경찰의 회복적 경찰활동의 구체적 내용과 한국경찰에의 시사점에 대해서 간략히 서술한다.

영국 테임즈밸리 경찰의 회복적 경찰활동 내용

영국에서 회복적 사법이라는 용어는 90년대 중반까지도 그리 널리 사용되지 않는 개념이었다. 그런데, 테임즈밸리 경찰은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공동체 참여 및 문제해결을 중시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회복적 사법을 경찰활동에 접목·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했다. 테임즈밸리 경찰의 회복적 경찰활동은 당시 Charles Pollard 관서장(Chief Constable)의 선구적 노력에 크게 힘입었다. 그는 전통 형사사법체계를 비판하면서 회복적 사법의 가치·원리를 적극 수용해서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방식으로 경찰관서를 운영하고자 했다. 그는 회복적 사법의 광범위한 활용을 통해 경찰활동과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변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며, 이런 그의 주장은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았다. Charles Pollard의 뒤를 이어, 2002년 Mel Lofty는 회복적 경찰활동은 회복적 사법이 지향하는 기본원리인 개방성, 존중, 공정한 절차 등을 반영하여 강제에 기반한 경찰력 행사(Police Force)에서 경찰 서비스 제공(Police Service)으로 전환 노력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강제력과 달리 서비스 경찰은 문제해결, 보다 더 넓은 의미의 지역사회 안전, 개별적인 책임과 접근,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배움, 미래를 바라봄, 혁신을 장려, 피해자·목격자·가해자 권리 존중 등에 초점을 둔다.

테임즈밸리 경찰의 회복적 경찰활동을 대표하는 주요 제도로는 회복적 회합(Restorative Conferencing)과 회복적 주의처분(Restorative Cautioning)이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호주의 Wagga Wagga 가족회합모델(Family Conferencing Model)에 영향을 받아 1994년 도입되었고, 1998년에는 소년범과 성인범 모두에 적용되었다. 이 프로그램들은 가해자, 피해자, 그들의 지원자들(주로 가족)이 참여하는 모임을 경찰이 주선·진행(Co-ordinator)하고, 모임을 통해 범죄로 인한 영향을 이야기하고 최적의 해결방식을 모색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며, 처벌보다는 피해의 회복과 당사자들의 관계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총 1,915건의 회복적 회합과 12,065건의 회복적 주의처분이 이루어졌다. 이 밖에도 공동체의 다양한 부문간의 갈등해결(예를 들면, 밤늦게 상점 주의를 배회하는 청소년들과 주변 주민간의 모임을 통한 갈등 해소)을 위한 공동체 회합(Community Conferences), 직장·가족·학교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갈등해결을 위한 회복적 갈등해결(Restorative Conflict Resolution)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결국, 영국 테임즈밸리 경찰의 회복적 경찰활동은 형사사법 분야 뿐만 아니라 범죄와 관련없는 분쟁해결(Non-Crime Dispute Resolution)에도

적용된다. 특이할 만한 것은 회복적 사법의 원리와 기법이 시민의 경찰관에 대한 진정사건과 경찰 내부 징계 사건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테임즈밸리 경찰은 회복적 사법 상담소(Restorative Justice Consultancy)를 설립, 이를 통해 경찰 교육, 회복적 프로그램의 실행 지원, 실행된 프로그램의 평가를 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에 들면서 테임즈밸리 경찰의 회복적 활동은 실무적·철학적 이유에서 이전 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회복적 경찰활동의 모범적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 한국에서도 대학생, 민간단체 등에서 회복적 사법 실천 대표기관으로서 테임즈밸리 경찰관서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한국 경찰에의 시사점

한국에서는 21세기 초부터 회복적 사법이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2000년 중반부터는 형사사법체계내에 이를 도입하려는 실천적 노력도 전개되면서 그 결과 2000년 후반부터는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과 법원 단계의 화해권고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경찰은 회복적 사법의 발전과 관련한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회복적 사법을 실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회복적 사법이 경찰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 자체적으로도 회복적 사법을 범죄대응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2007년 경찰청에서 형사정책연구원·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NGO)와 공동으로 가족회합 프로그램을 시범운영(13개서)한 것을 시작으로, 일부 경찰관서에서 4대사회악 중 하나인 학교폭력 등 소년사법 분야에 회복적 사법과 연관된 제도를 적용한 바 있고,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원스톱(One-Stop) 지원센터, 피해자 심리요원(Care : Crime-Intervention, Assistance, Response) 특채, 피해자서포터 제도, 피해자 정보제공(권리고지제도·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서비스)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형사사법을 넘어 일반적 사회갈등해결 조정·중재자로서의 경찰(정보경찰·지역경찰 등) 역할 강화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회복적 경찰활동은 선택가능한 프로그램, 일회성·단편적 시책이라기보다는 경찰활동의 총체적 비전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복적 철학과는 무관한 정책으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회복적 경찰활동을 장기적 개혁과제로 선정, 이를 체계화·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경찰 조직 구조와 문화의 변화와 함께 경찰 조직 내부 공감대 형성을 위해 회복적 사법과 회복적 경찰활동의 원리·실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전통적 경찰활동에 길들여져 있는 조직원들을 이 해시켜야 한다. 두번째로, 경찰의 회복적 처분들이 제도화된 경찰재량, 즉 수사권에 기반하도록 형소법 등 관련 법률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회복적 경찰활동 전문가 양성, 회복적 경찰활동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야 개척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이런 관점에서 영국 테임즈밸리 경찰의 사례는 회복적 사법 실천의 현장의 주역으로서 한국경찰의 위상 정립과 발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PSI**

□ 원고모집 안내

치안정책리뷰 ‘치안정책동향’에 다양한 치안관련 원고를 모집합니다. 투고한 원고 중 채택된 분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보내드리며,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내실 내용

- 치안관련 논문 요약본
- 치안정책관련 칼럼
- 해외 경찰관련 자료 및 경찰활동 사례
- 기타 치안정책관련 동향 및 의견

□ 보내실 곳

- e-mail : webmaster@psi.go.kr
- 내부망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강소영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치안정책연구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치안정책리뷰는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www.psi.go.kr).

치안정책리뷰 편집팀

편집팀장 : 강소영 선임연구원
 편집위원 : 권태형, 이춘삼 연구관

치안정책리뷰 편집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74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446-703)
 ● 전화 : 031-620-2374 (경비) 61-2374
 ● e-mail : webmaster@psi.go.kr

- ☆ 현장에서 느낀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현장의 소리’에 글을 보내주신 분들 중 채택된 분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 앞으로도 일선경찰관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경찰관 중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께서는 학위논문 1부를 보내주시면 치안정책 발전을 위한 연구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입법 및 판례 소개

국내 주요 입법

●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5189호, 2014. 2. 18. 일부개정, 2014. 4. 6. 시행
- 주요내용

·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다면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다면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등 손실보상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 기타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대통령령 제25159호, 2014. 2. 11. 일부개정
- 시행: 2014. 2. 14.
- 주요내용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하여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지리안내 영상 등을 제외한 영상을 표시하거나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행위를 범칙행위로 처리 가능한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2045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해당 영상 표시 및 영상표시장치 조작 행위에 대한 범칙금 금액을 승합자동차의 경우 7만원, 승용자동차의 경우 6만원 등으로 정함.

- 동 시행규칙(안전행정부령 제59호)
- 위 행위에 대하여 15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와 해당 행위가 3회 이상 있을 경우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안전행정부령 제55호, 2014. 1. 29. 일부개정 및 시행
- 주요내용

· 경찰청의 조직·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반행정직 전환시험에 합격한 일반직 사무운영직렬 공무원 81명(사무운영서기보 81명)의 정원을 일반직 행정직렬 81명(행정주사보 18명, 행정서기 52명, 행정서기보 11명)의 정원으로 전환함.

· 신임경찰 교육생의 효율적인 인성관리를 위하여 경찰교육기관에서 심리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기술서기보 정원 4명에 해당하는 정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대통령령 제25128호, 2014. 1. 28. 일부개정, 2014. 1. 31. 시행
- 여성가족부령 제50호, 2014. 1. 28. 일부개정, 2014. 1. 31. 시행
- 주요내용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을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기관으로 정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제12341호, 2014. 1. 28. 제정

- 시행: 2014. 9. 29.

- 주요내용

·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이 성인인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과 교화가 필요한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함.

· 아동학대치사죄 및 아동학대중상해죄를 신설하여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상습범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도록 함.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도록 함.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2327호, 2014. 1. 21. 일부개정

- 시행: 2014. 7. 22.

- 주요내용

·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은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제25107호, 2014. 1. 21. 일부개정 및 시행

- 주요내용

· 경찰지휘부의 인적구성을 다원화하고 치안인력 수급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대학의 입학 정원을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축하여 운영함.

● ‘경찰공무원법’

- 법률 제12233호, 2014. 1. 14. 일부개정

- 주요내용

· 경찰공무원으로서 정치 운동의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 형량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고, 그 죄의 공소시효의 기간을 10년으로 함.

국내 주요 판결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7101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 사건의 개요(녹음파일 부분)

· P지청 검사는 2012년 8월 3일 P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사건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이 사건 영장에 피의자는 A, 압수할 물건은 ‘피고인 B 등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휴대전화, 스마트폰) 등’, 압수·수색할 장소는 ‘B의 주거지 등’, 영장 범죄사실은 ‘피의자는 공천과 관련하여 2012. 3. 15. 및 3. 28. 공소의 D에게 지시하여 T당 공천심사위원인 공소의 E 등에게 거액이 든 돈 봉투를 각 제공하였다 등’으로 각 기재함.

· 이에 따라 P지검 수사관이 B의 주거지에서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려 이를 P지청으로 가져온 후 그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전자정보를 분석하던 중 B와 C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이 사건 녹음파일을 통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점을 발견하고 수사를 개시하였으나, 위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녹음파일을 임의로 제출받거나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함.

- 판결요지[상고기각]

· 이 사건 녹음파일에 의하여 그 범행이 의심되었던 혐의사실은 공직선거법상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내지 선거운동 관련 금품요구·약속의 범행에 관한 것으로서 범행의 객관적 내용만 볼 때에는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종·유사의 범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

· 그러나 이 사건 영장에서 당해 혐의사실을 범하였다고 의심된 ‘피의자’는 피고인 A에 한정되어 있는데, 수사기관이 압수한 이 사건 녹음파일은 피고인 B와 피고인 C 사이의 범행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 A가 그 범행에 가담 내지 관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음.

· 따라서 수사기관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압수된 이 사건 녹음파일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에 준용하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는 ‘피고사건’ 내지 법 제215조 제1항이 규정하는 ‘해당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이와 같은 압수에는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제3항 본문이 규정하는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임.

●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2헌마267 결정**

[경찰공무원법 제2조 등 위헌확인]

- 결정요지[각하·기각]

· 경찰공무원의 계급을 치안총감을 제외한 10개의 계급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법 제2조 및 공무원 호봉 확정시 근무 경력을 인정함에 있어서 경찰공무원의 각 계급에 상당한 일반직 및公安직공무원의 계급을 규정하고 있는 구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별표 2] 호봉확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중 ‘경찰’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 각하하고,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규정하고 있는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의한 [별표 10] 중 ‘경위’, ‘경사’ 부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1헌바174 결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사건의 개요

· 청구인 A와 B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0. 5. 10. 12:10경부터 12:40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광장에서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말하게 해 달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각자 들고 6~7미터 간격으로 서 있는 방법으로 미신고 시위를 주최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소송계속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회시위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7. 28. 기각되자, 2011. 8.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

- 결정요지[각하·합헌]

미신고 옥외집회·시위의 주최자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중 제6조 제1항 본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PSI**

(정리: 수사구조개혁연구실 연구관 김현숙)



연구소 소식 및 연구관 동정

연구소 소식

◆ 1.27(월) 「치안전망 2014」 발간·배포

치안환경 변화와 경찰, 2014년 분야별 치안전망, 경찰의 대응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치안전망 2014」는 4장, 396쪽으로 구성되었다. 전국 경찰관서 및 중앙행정부처, 경찰 관련 학회, 학과 등에 2000부가 배포되었으며, 연구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정을 거칠 예정이다.



◆ 「4대 사회악 연구센터」 자료수집 및 재정비

연구소는 「4대 사회악 연구센터」를 새롭게 단장하고, 연구센터 내에 경찰청 및 전국 16개 지방청에서 제작·발간한 4대 사회악 관련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비치하였다. 올해에도 연구소는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해 연구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각 경찰관서 및 관련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치안정책연구소 책임연구과제 선정

2.3(월)~14(금) 연구소 연구관들의 책임연구과제를 선정하였다. 책임연구과제는 경찰청, 각 지방청에서 수집한 연구과제 및 자체 발굴한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중복성, 시의성 등을 검토하여 전체 연구관회의에서 심의 후 선정하였다. 향후 선정된 책임연구과제는 2014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경찰청·전국 지방청 4대 사회악 자료

◆ 정책연구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개최

2.19(수) 치안정책연구소장, 연구부장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연구주제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에서는 공모 정책연구주제 44건을 대상으로, 연구수행 가능성, 학술적 가치, 실용성 등을 검토하였다.

향후 선정주제 제안자 발표 및 포상(2. 24),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자 공모(3. 3~3. 14/2주간), 정책연구용역과제 심의위원회(3월 中),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자 계약(4월 初)의 일



4대 사회악 관련 자료

치안정책연구 제28권 제1호 원고모집 안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인 「치안정책연구」 제28권 제1호 발간을 위한 논문을 공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www.psi.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안정책연구」는 2013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1차 평가를 통과하였습니다.

- ▶ 공모 기간: 2014. 3. 10(월)~5. 1(목)
- ▶ 응모 자격: 국내·외 대학 강사 이상, 연구소 연구원, 대학원생 및 경찰실무 경력자 등
- ▶ 주제 분야: 치안정책, 범죄수사, 생활안전, 사회안정, 교통, 안보대책 등 경찰 및 범죄 관련 분야

연구관 동정

◆ **권태형 연구관(정책기획연구실)**은 1월 13일 제182기 경감기본교육과정과 2월 6일 제29기 치안정책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이해’에 대해 강의하였다.

◆ **김학신 연구관(생활안전대책연구실)**은 1월 21일, 2월 4일 중앙경찰학교에서 신임순경을 대상으로 헌법 기본 교육을 강의하였고, 2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9급 신규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헌법으로의 초대’란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 **강소영 연구관(범죄수사연구실)**은 2월 5일 경찰청 연구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였고, 24일 제29기 치안정책과정에서 ‘범죄학의 이해’와 25일 중앙경찰학교에서 신임순경 과정을 대상으로 ‘피해자의 이해와 보호’를 주제로 강의하였다. 또한, 「대테러연구」 제36호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위협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 **이기수 연구관(수사구조개혁연구실)**은 1월 14~16일 중앙경찰학교 제280기 신임순경과정에서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연구소 인사

◆ 1월 15일 제6대 치안정책연구소장 **최경식 경무관**의 명예퇴임식이 있었다.



◆ 1월 16일 제7대 치안정책연구소장에 **김학역 경무관**이 취임하였다. 주요 경력으로는, 전북 진안서장, 경찰대학 경찰학과장, 서울 중암경찰서장, 경찰청 교통안전과장,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전북청 차장, 경찰대학 학생지도부장, 광주청 차장(청장 대행), 서울청 교통지도부장 등을 역임하였다.



김학역 치안정책연구소장 이봉행 기획운영과장

◆ 1월 21일 치안정책연구소 기획운영과장으로 **이봉행 총경**이 부임하였다.

◆ 2월 6일 기획운영계장으로 **이준호 경정(승)**이 부임하였고, 10일 사회안전대책연구실 연구관으로 **김문귀 경감**이 전입하였다.

◆ 2월 28일 안보대책연구실 **유동열 연구관**이 명예퇴임을 하였다. **PSI**



치안정책연구소 소개

치안정책연구소는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 경찰이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의 치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생산해 내는 산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경찰연구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경찰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찰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비전 수립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연구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연구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치안관련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최신 국내외 연구자료의 DB(데이터베이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치안정책연구 토대의 확충과 해외 치안정책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에도 힘을 기울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치안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적실성 높은 연구성과 창출로 치안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한국경찰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치안정책분야의 세계 최고 연구기관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PSI**

치안정책연구소 부서별 업무

부 서	담 당 업 무
정책기획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치안수요 예측 및 대응방안 수립 • 기획·정책개발·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감사정보통신·홍보 분야 등에 관한 연구 • 총무행정·보수·후생복지 등에 관한 연구
사회안정 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정보활동 및 국내 사회안정 대책 연구 • 경찰 경비활동 및 대테러 대책 연구
안보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을 대비한 치안분야의 연구 • 남북교류 및 북한이탈주민 관리방안 연구 •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연구·분석 •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및 발전방안 연구
생활안전 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예방 및 소년·여성범죄에 관한 연구 • 경찰외근, 민간경비 업무 등 중장기 생활안전 대책 연구
교통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교통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교통업무전반의 효율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
범죄수사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수사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범죄분석 및 범죄수사에 관한 연구
수사구조 개혁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수사구조개혁 방안에 관한 연구 • 수사경찰제도 및 수사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운영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 보안, 인사 등에 관한 사항 • 회계, 청사유지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소 홈페이지 및 자료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연구소내 사무와 다른 연구실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연구소 중장기 발전계획 및 홍보업무 • 연구계획 수립관리 및 세미나 개최에 관한 사항 • 간행물의 인쇄·배포에 관한 사항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등 협의 업무

